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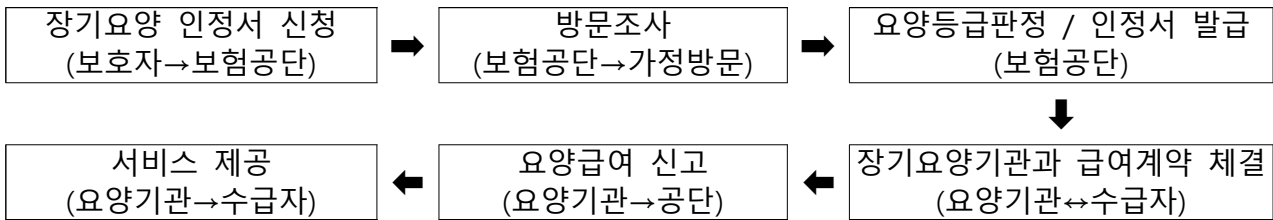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(재가장기요양)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?

치매, 중풍,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세수, 목욕, 배변처리, 식사, 세탁, 주변 환경정리, 간호처치, 말벗, 외출 및 진료 동행 등을 수급자의 가정방문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

2. **급여계약의 목적**은 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급자와 가족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, 수급자, 수급자 가족, 요양보호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약서를 작성 후 제공합니다.

3. **계약기간**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 종료 시 까지로 합니다.

4. 입소 보증금은 없으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수급자(보호자)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타 기관이용 희망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본 센터에서는 수급자께서 지속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하여 협조해드립니다.

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

가. 이용수가 및 본인부담금

주야간보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40조 1항에 의하여 아래 표의 요양등급별 수가 중 **85%**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**15%**는 본인이 부담 합니다.

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 일부 및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도 월 한도액

요양 1등급	요양 2등급	요양 3등급	요양 4등급	요양 5등급	인지지원 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나. 주·야간 보호의 월간 이용요금

(1) 월간 이용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'5의 가'항과 동일합니다.

(2) 추가비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본인 부담금에 추가합니다.

계	이·미용료	의료비	식대(2식)	간식(1식)
8,000원	실비 및 봉사	실비	7,000원	1,000원

- (3) 월간 이용 횟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1일 이용시간은 09:00~18:00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 시간 조정으로 추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 이용한도액은 변동이 없으나 본인 부담금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.

6. **신원 인수인의 권리·의무**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가. 수급자(보호자)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.(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한함)
- 나. 수급자(보호자)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.
- 다.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다.
- 라. 노인학대 및 성희롱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한다.
- 마. 수급자(보호자)에 관한 신상정보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바.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사. 요양보호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.
- 아. 수급자(보호자)는 지정된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7. **계약의 해지**

- 가.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해지 요구시 급여계약기간 이내라도 최단시간내에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수급자가 타 기관의 요양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.
- 나.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
 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)
 -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, 센터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.
 - ④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로 기관의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